

# 플랫폼창동61 갤러리510 대관규정

제정 2017.06.01.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플랫폼창동61 갤러리510 대관규정'에 의하여 갤러리510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플랫폼창동61 갤러리510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화요일~일요일 10:00-22:00 (월요일 휴관)
2. 대관 내용과 기획에 따라 규정 내 운영시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시 시간 조율이 가능하다.

②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및 공휴일
3. 시설점검, 보수공사 등 운영상 필요 시
4. 기타 운영 관련하여 휴관이 필요한 경우 플랫폼창동61의 허가 하에 휴관

## 제3조(대관신청 기준)

- ① 대관은 이용일 기준으로 최소 한 달 전에 신청해야만 승인이 가능하다.
- ② 대관기간은 최소 일주일(7일)을 기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제4조(대관기간)

- ① 대관기간은 이용기간 외에 준비 및 철수기간을 포함한다.

## 제5조(사용료)

- ① 시설 사용료는 1일 3만원을 기본으로 한다.
- ② 사용료는 대관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관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사용시작 일까지의 합산일이 10일이 안될 경우 대관승인서에 별도 명시한 날짜를 입금기한으로 한다.
- ③ 대관기간 중 휴관일이 포함될 경우, 휴관일은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 ④ 동북4구(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단체의 대관인 경우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의 범위는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6조(대관절차)

- ① 대관신청서 작성
- ② 대관 승인 후 계약서 작성
- ③ 10일 이내 대관료 입금

## 제7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신청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 제8조(시설 및 설비 변경)

- ① 대관자는 시설 설비의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운영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대관 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하며, 철거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운영사에서 먼저 철거 또는 폐기한 후 대관자가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단, 운영사가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 파손 등에 대해서는 대관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며 운영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거나 변상하지 않는다.
- ② 대관자는 대관 종료 후 공간을 대관 전 상태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

## 제9조(광고 홍보물 협의)

- ① 대관자는 대관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플랫폼창동61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사의 내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대관자는 플랫폼창동61에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할 경우 운영사가 지정한 장소에 따라 게시한다.

## 제10조(규정의 효력 및 적용시기)

본 규정은 계약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제11조(규정위반시의 책임)

- ①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 사유 또는 운영사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② 대관자는 대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영사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 청구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운영사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 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 제12조(관할 법원)

이 규정에 따른 분쟁은 운영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